

## 학부모위원 선출공고

정광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3조에 따라 제26기 정광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### 1. 입후보 등록

가. 자격: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####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 학부모위원 정수: 4 명

다. 등록기간: 2025. 3. 10.~ 3. 14.(5 일간)

라. 등록장소: 정광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

마. 구비서류: 입후보 등록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(사진 1매)

### 2. 위원선거

가. 일시: 2025. 3. 21.(10:00~)

나. 장소: 정광중학교 본관

다. 선출방법: 학부모, 전체회의 소집이 어려움에 따라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표투표, 전자적 방법으로 선출

라. 입후보자 소견발표: 투표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

마. 선거인명부 열람: 2025. 3. 10.~ 3. 14.(행정실)

바. 당선자 결정: 최다 득표순으로 결정(단,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)

### 3. 당선자 발표
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2025년 3 월 10 일

정광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